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712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0. 6. 11.

판 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1. 피고가 2018. 12. 17.[1] 원고에게 한 취득세 117,426,7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6,242,5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471,2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소장 및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기재 '2018. 12. 14.'은 오기이다(갑4호증의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3. [redacted]시 [redacted]구 B 지상에 공동주택 81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4.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 124,988,989,597원[2]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3,401,746,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서 C초등학교의 증축비용 3,828,418,389원(이하 '이 사건 교사 증축비용'이라 한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664,519,000원 및 도시계획시설 조성비 2,647,374,744원 등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8. 12. 17. 원고에게 위 각 금액 등을 추가로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223,818,080원, 지방교육세 11,898,470원, 농어촌특별세 4,710,240원 합계 240,426,79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6. 28. 취득가격에서 위 도시계획시설 조성비를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18. 원고에게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취득세 106,391,360원, 지방교육세 5,655,910원, 농어촌특별세 2,239,010원 총 합계 114,286,280원(각 가산세 포함 감액가산금 및 환급가산금 제외)을 환급하였다[3](이하 2018. 12. 17.자 과세처분에서 위와 같이 환급된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주거용 건물(상가별도)의 취득가격은 124,728,286,423원이고, 상가의 취득가격은 260,703,174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총 취득가격은 124,988,989,597원이다(갑3호증).
3) 피고 2020. 3. 31.자 준비서면 별지1 및 갑7호증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내지 7호증, 을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교사 증축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와는 독립된 과세물건인 이 사건 교사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원고는 기부채납을 위해 이 사건 교사를 증축하였으므로 그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하며, 위 비용은 [redacted]도[redacted]교육지원청(이하 '[redacted]교육청'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른 것일 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교사 증축비용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온 비과세관행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그 관행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소급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3) 원고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피고의 종전의 세법해석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원고가 피고의 종전의 세법해석과 달리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8 내지 10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1. 5. 25. 피고로부터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는데, 이에 대한 행정이행사항(조건포함) 중 용인교육청 관련 사항으로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거 수용대상교인 C초등학교를 사업시행자가 증축할 시 학생수용이 가능하며……, 2. 학교증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전에 용인교육청과 협의 완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 있다.

2) 원고는 2011. 5. 31. 용인교육청 교육장과 사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원고가 C초등학교에 보통교실 8학급, 특별교실 2학급 등(이하 '이 사건 교사'라 한다)을 증축하여 이를 무상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교사를 신축하여 2014. 6. 2.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해 9월경 [redacted]교육청에 기부채납 하였고, [redacted]도지사는 2014.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교사 증축 및 무상공급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1) 이 사건 교사 증축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2014. 5. 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 ·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등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교사를 증축한 후 이를 용인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교사 증축비용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제3호)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예시에 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과하므로, 이 사건 교사 증축비용이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라면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7386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등 참조).

(2) 구 학교용지법 제3조 제1항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교사의 증축은 위 규정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조건(을1호증)에는 원고가 C초등학교증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redacted]교육청과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2011. 8. 31. 이 사건 교사 증축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 건설에 따라 증가할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건물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교사를 증축하도록 한 것은 원인자인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사 증축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성격은 간접비용으로 볼 수 있다.

(4)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시 · 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제4호)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조항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부과의 필요성을 야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용인교육청 교육장과 사이에 이 사건 교사의 증축 및 무상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협약을 체결한 '원인'은 '원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300가구 규모 이상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원고는 이 사건 교사를 증축한 후 기부채납하여 실질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이로 인해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교사 증축비용이 학교용지부담금과는 그 부담의 경위나 방식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및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책임져야 할 동일한 내용의 부담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교사 증축비용은 학교용지부담금과 대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 여기에서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인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관계 자체는 제대로 파악하였으나 관련법규를 잘못 해석하거나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해서는 안 된다거나 과세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과세하지 않아 그것이 관행으로 정착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조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한편 일단 성립한 비과세관행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앞으로 당해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전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처분 또는 결정과 같이 구체적인 행정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서 그로 인하여 납세자가 더 이상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250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갑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2014. 6. 3. 당시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피고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있었고, 이러한 비과세관행은 2015. 12. 11.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유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2. 11. 이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관하여 종래의 비과세관행과 다른 내용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과 대체관계에 있는 이 사건 교사 증축비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1) 행정자치부는 2005. 1. 26. '개인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취득가격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학교용지)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이므로, 취득시기 이전에 제3자에게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취·등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유권해석을 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행정자치부 2005. 1. 26.자 세정-429 질의회신).

(2) 이에 따라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들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득세 과세표준과 관련한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정자치부의 입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을 근거로 적어도 2015. 12. 말경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왔다. 그리고 [redacted]도가 발간한 '2015 법인 세무조사 업무 매뉴얼'(갑12호증의 1)에도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공동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를 비롯한 일부 과세관청들에게는 2005. 1.경 이후 2015. 12. 말경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고 이를 기초로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이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과 같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되었는데, 위 개정이유는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취득과 관련 없는 비용까지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사례가 있어 판례 · 세정운영 사례 등을 종합하여 취득가격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있을 뿐,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던 학교용지부담금 등(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간접비용)을 새롭게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하고자 하는 데 있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가 개정되어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에 유지되던 비과세관행이 변경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한편, 행정자치부는 2015. 12. 11.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규정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하 '이 사건 유권해석'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들에게 이를 전파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 과세를 의뢰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과세관청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실무가 정착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과세관행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관한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이를 실무 관청을 통해 전파할 무렵인 2015. 12. 말경에는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전에 과세관청이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번복하는 내용의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납세자들이 더 이상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여겨질 정도의 사정이 있는 등 이보다 앞서 비과세관행이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5)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무렵에는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이나 감사원의 심사결정을 통해 세금 관련 실무에 알려져 통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교사 증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는데, 이점에서 원고도 위와 같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나 비과세관행을 알고 이를 신뢰하고 위와 같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짐작된다.

(6) 피고는 2015. 12. 11. 이전에 이미 건축이 완료되고 취득세 신고·납부까지 마쳐진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3년여가 지난 2018. 12. 17.경에 이르러 원고의 취득세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이 사건 교사 증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는 원고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7) 피고는, 비과세관행의 성립과 소멸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비록 지방세의 경우에도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과세권자별로 따로 판단할 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는 없다고 전제한 후,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비과세관행은 [redacted]시가 2010년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취득세 운영실무'를 발간하여 공적견해를 표명함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3조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 ·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취득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비관세관행이 성립 · 유지되고 있는지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8누693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58027 판결 참조[4]).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이 사건 유권해석 이전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redacted]시의 '부동산 취득세 운영실무' 기재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피고가 속한 경기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비과세관행이 성립 ·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두 사건 모두 과세권자가 [redacted]시인 사안이었는데, '[redacted]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 · 유지되고 있었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비과세관행을 부인하였다. 한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1. 28. 선고 2018누10784 판결에서는 경상남도가 과세권자인 사안에서 위 두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비과세관행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4. 5. 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 주체)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 · 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 ·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 · 개발)

① 300가구(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 · 징수)

① 시 · 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 · 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끝.